

예산 편성 기준

□ 인건비 지급 기준

(단위 : 천원)

구분	대상	지급기준	산출예시
특별강의	○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	○ 상한 없음	
특별(가)	○ 전·현직 장·차관(급) ○ 전·현직 대학총장(급) ○ 전·현직 국회의원 ○ 대기업체 대표(연수원장, 연구소장 포함) ○ 국영기업체장 ○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○ 인간문화재 ○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	○ 1시간당 250 ○ 기본시간(2시간) 초과시 매시당 150	○ 3시간 강의의 경우 - $250 \times 2 + 150 = 650$
특별(나)	○ 대학의 부교수 이상 ○ 예술인, 종교인 및 언론인 ○ 대기업, 전국 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 ○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 ○ 산업훈련, 레크리에이션전문가(3년이상 경력자) ○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(3년이상 경력자) ○ 3급이상 공무원 ○ 박사학위를 소지한 4, 5급이상 공무원 ○ 시, 도의회 의원 ○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	○ 1시간당 200 ○ 기본시간(2시간) 초과시 매시당 150	○ 3시간 강의의 경우 - $200 \times 2 + 150 = 550$
일반(가)	○ 대학의 조교수 이하 ○ 대기업 중간관리자 및 중소기업 대표 ○ 산업훈련 전문가(3년미만 경력자) ○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(3년미만 경력자) ○ 도 단위 사회복지 및 직능단체장 ○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, 다, 라 제외	○ 1시간당 180 ○ 기본시간(2시간) 초과시 매시당 120	○ 3시간 강의의 경우 - $180 \times 2 + 120 = 480$
일반(나)	○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○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	○ 1시간당 160 ○ 기본시간(2시간) 초과시 매시당 90	○ 3시간 강의의 경우 - $160 \times 2 + 90 = 410$
일반(다)	○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임직원 ○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 ○ 외국어 학원강사	○ 1시간당 140 ○ 기본시간(2시간) 초과시 매시당 60	○ 3시간 강의의 경우 - $140 \times 2 + 60 = 340$
일반(라)	○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	○ 1시간당 40	○ 2시간 강의의 경우 - $40 \times 2 = 80$
기타	○ 사이버교육 강사	○ 1차시당 30	○ 2시간 강의의 경우 - $30 \times 2 = 60$
포럼 등	○ 좌장, 발제자, 토론자	○ 좌장 : 300 ○ 발제자 : 400 ○ 토론 : 150	○ 일당으로 지급

※ 강의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급단가에는 원고료, 유류비 포함

※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급의 강사수당을 적용

※ 강사의 전문성, 지명도에 따라 강사료를 별도로 융통성 있게 운영(특별강의, 포럼 등 경우)

□ 각종 회의참석 및 심사평가수당 지급기준

구 분		지급액	지 급 기 준		비 고	
인건비	참석수당	이사회 참석 수당	25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	경기도 공무원 및 당연직 지급제외
		위원회 참석 수당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료(2시간) - 150,000원 • 초과시간(1일 2회한) - 50,000원 •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- 50,000원 		
		각종 회의 참석 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료 (2시간) - 15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시간 2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 지급 • 단, 일반적 의견을 듣는 회의(FGI 등)의 경우, 5만원~10만원 지급 		
사업진행비	식사비 및 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 기준 최대 15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총액 10%이내 편성 (사업비 총 5,000,000원일 경우, 50만원 이내 편성) 	-		
홍보비	홍보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 기준 1만원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며, 단순한 기관 홍보 물품 제작 불가 ※ 홍보물품 제작 시, 반드시 경기복지재단 CI 및 사업명이 기입되어야함. 	-		